

# 집기 사양설명서

## 1. 적용범위

- 이 규격은 탁자 및 의자의 안전, 성능 요구사항 및 제작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 제품 품질 및 사양은 아래의 제원을 기준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작후 납품한다.

## 2. 규격

분류	예시	규격(W*D*H)
탁자		600×400×740mm
의자		500×555×835mm

## 3. 구성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KS G 4203 사무용 책상 및 테이블 관련 지침 내지는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부합 되도록 협의하여 제작하며 제품 제작 전 제품의 상세사항을 포함한 제작도면 및 제작시방서를 제출한 후 발주자의 승인 후 제작한다.

## 4. 형태

형태 및 치수는 제작도면에 따르되 부품 치수의 허용공차는  $\pm 10\text{mm}$ 로 한다.

### 4.1 마감 및 외관

4.1.1 겉모양의 다듬질은 양호하며 접합 부분의 어긋남 등 현저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4.1.2 인체 및 의류가 닿는 부분에는 예리한 돌기, 모서리 등이 없어야 한다.

4.1.3 도장 면이 보이는 부분의 광택, 색조가 균일하고, 도장얼룩 및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한다.

## 5. 제조 및 가공

5.1 제품별로 6.항의 제작사항에 의하여 제조 가공되어야 하고, 제작도면과 같게 제작되어야 한다.

5.2 조립은 용접, 그밖의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5.3 나사류, 그밖의 고정쇠를 사용하여 조립하는 경우는 접합부가 헐거워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4 통상의 제품 사용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5 조작부가 있는 경우는 쉽게 다룰 수 있고, 또한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5.6 몸체를 지지하는 지각 등은 좌우 몸통과 견고하게 조립되어 있고 매끄럽게 작동하며 사용할 때 현저한 소음이 없어야 한다. 또 기름 누출 등에 의해 바닥 등을 더럽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5.7 분해 가능한 부품 및 부자재가 있는 경우는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8 등, 좌판에 사용되는 걸감용 원단은 일정한 땀수 및 시접으로 봉재하여 봉재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 6. 제작사항

### 6.1 책상

6.1.1 책상판은 H.P.M 또는 L.P.M으로 표면 마감한 28m/m이상 M.D.F 또는 P.B를 사용한다.

6.1.2 전열 커버는 알루미늄 성형품을 사용하며 P.P 사출마감재를 끼워 마감한다.

6.1.3 책상 판 지각은 1.5t이상 철판 가공물과 장 타원형 파이프를 용접하여 사용한다.

**도면을 참고하여, 1열(4인석 or 3인석)당 3개의 다리를 제작한다.**

6.1.4 설치 전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관과 공정에 대해 협의 한다.

설치는 완전히 마감된 바닥에 승인된 배치도면에 따라 현도한 후 양카드릴로 구멍을 뚫은 다음 양카홀에 양카볼트의 세트를 넣고 편칭하여 바닥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6.1.5 설치가 된 하부지각에 볼트가 튀어나와 사용자가 다칠 수 있으므로 발로 차거나 밟았을때 다치지 않는 형상의 플라스틱 사출 캡을 제작하여 씌워준다.

## 6.2 의자 ※ 컬러 : 블랙

6.2.1 등판 : 외장재 메쉬 원단 마감, 외통 플라스틱 사출성형품(나일론)MESH고급천 마감,

※ tension 기능

6.2.2 좌판 : 외장재 천원단 마감, 속통 복합성형플라스틱(나일론), 스펀지는 두께400MM이상 폴리우레탄성형 스펀지(PU)

6.2.3 팔걸이 : 없음

6.2.4 프레임 : 타원형 파이프 20/34\*1.4T,Ø34\*2.9T이상 구조용 탄소강관을 벤딩 가공, 12MM 환봉등의 복합 구조물, 실버 분체 도장 마감, U 형 마루봉 사용.

6.2.5 발굽은 우레탄 이중사출 캐스터

## 7. 하자보증

하자보증기간 : 납품일로부터 1년

보증기간 내 제작자는 설계 및 제작 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8. 포장 및 표시

### 8.1 포장

매 제품은 통상 포장관례에 따르되, 운반 및 적재 시 굽힘 등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일반 상관례에 따라 포장하여야 한다.

### 8.2 표시

매 제품에는 적당한 크기와 모양의 공용물품표지 및 정부물품명판을 선명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 9. 설치사항

**9.1 선정된 업체는 공사업체와 협의완료 후 발주처의 동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사양으로 설치한다**

9.2 의자 중심거리는 규격에 맞게 한다.

9.3 의자배열은 승인된 배치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9.4 의자 설치하기 전 항상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관과 공정에 대하여 협의 하여야 한다.

9.5 설치는 완전히 마감된 바닥에 승인된 배치도면에 따라 현도한 후 앙카드릴로 구멍을 뚫은 다음 앙카홀에 앙카볼트의 세트를 넣고 편칭하여 바닥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9.6 바닥에 고정된 앙카볼트에 지각을 조립하여 고정시키고 각 부품을 공정순서별로 조립 하여 설치완료 한다. (계단식 설치전 계단 설치되기전 건축공사랑 세부공정 할 것)**

9.7 설치완료 후 최종점검 및 마감도장을 한다.

## 10. 납품검사

**2023년 8월 29일까지** 계약자(수급자)는 제작 및 설치완료 후 검수확인을 받는다.